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78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7월 1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2018년 4월 설립된 ‘서울관광재단’ 과 시장 직속으로 신설(2019.7.25.)될 예정인 ‘서울민주주의위원회’ 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‘서울민주주의위원회’ 를 추가함(안 제33조 제1항제2호).
- 나.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중 ‘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업무 중 시의 출자 등과 관련된 업무·회계·재산에 관한 사항’ 을 ‘서울관광재단’ 으로 변경함(안 제33조제1항제5호).
- 다. 일부 조문을 정비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다. 기 타 :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2호 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러.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관한 사항

제33조제1항제5호 중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아. 서울관광재단에 관한 사항

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, 제36조제3항을 준용하고, 제37조제2항, 제3항, 제4항, 제7항, 제8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9조제3항 중 “제6항, 제7항” 을 “제4항, 제7항, 제8항” 으로 한다.

제54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” 를 “「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3조제1항제2호 러목 신설 규정은 2019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3조(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행정자치위원회 가.~다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p>3.~4. (생략)</p> <p>5.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.~사. (생략)</p> <p>아. <u>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업무 중 시의 출자 등과 관련된 업무·회계·재산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자.~타. (생략)</p> <p>6.~10. (생략)</p>	<p>제33조(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행정자치위원회 가.~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러. <u>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.~사. (현행과 같음)</p> <p>아. <u>서울관광재단에 관한 사항</u></p> <p>자.~타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~10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8조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<u>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, 제36조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, 제37조제2항, 제3항, 제6항, 제7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.</u></p>	<p>제38조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, 제36조 제3항을 준용하고, 제37조제2항, 제3항, 제4항, 제7항, 제8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
<p>제39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, 제36조 제3항을 준용하고, 제37조제2항, 제3항, <u>제6항, 제7항</u>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39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제4항, 제7항, 제8항</u>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54조(행정사무감사 및 조사) ① (생 략)</p> <p>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>제54조(행정사무감사 및 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----- -----.</p>